

#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413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5. 2. 27.

발 의 자 : 문화체육관광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관련 상위법에서 '진품보증서' 및 '진위 감정서'를 '진품보증서'와 '이에 갈음하는 증명서'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하위 법규인 원안 또한 이를 반영하여 수정함.
- 작품의 손상 및 감정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, 소장 미술 작품의 진품 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 구비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함.

## 2. 수정주요내용

- 가. 「미술진흥법」의 명시에 따라 용어를 변경함(안 제24조).
- 나. 진품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 구비를 임의규정으로 하여 시장의 책무를 추가함(안 제24조).

#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③ 시장은 소장 미술작품에 대한 진품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구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# 수정안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24조(소장미술관자료 의 보관 및 관리) ① · ② (생략) <u>&lt;신설&gt;</u>	제24조(소장미술관자료 의 보관 및 관리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시장은 소장 작 품에 대한 진품보증 서를 구비하여야 하 며, 작고 작가의 작 품일 경우에는 공인 된 감정기관에 진위 감정서를 요구해야 한다.</u>	제24조(소장미술관자료 의 보관 및 관리) ① · ② (개정안과 같음) ③ <u>시장은 소장 미 술품작품에 대한 진품 증명서 또는 이에 같은하는 증명서를 구비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.</u>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시장은 소장 미술작품에 대한 진품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구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4조(소장미술관자료의 보관 및 관리) ①·② (생략) <u>&lt;신설&gt;</u>	제24조(소장미술관자료의 보관 및 관리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시장은 소장 미술작품에 대한 진품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구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